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49,568,280	25,487,048
일반회계	778,429,965	23,352,899
특별회계	71,138,315	2,134,149
공기업특별회계	37,683,394	1,130,50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780,634	683,4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902,760	447,083
기타특별회계	33,454,921	1,003,6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69,589	119,0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15,040	87,45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61,176	10,83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11,227	48,337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946,694	118,4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41,617	7,249
도시개발특별회계	5,646,530	169,39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76,421	11,293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06,653	12,20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170,695	125,12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837,905	85,137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6,971,374	209,1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230,37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사"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